제 회 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원서

					(앞곡)	
응시지역		응시번호				
응시자	성명	한자				
	생년월일			-		
	주소				사 진 3cm× 4cm	
	전화번호					
응시 업무영역	[]기계안전 []전기안전 []화공안전 []건설안전 []직업환경의학 []산업위생					
시험의 일부 면제 (해당자만 표시)	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104조제1항()호에 해당			* 확인		
	보건법 시행규칙」 제226조제1항에 따라 (<u> </u>	• 산업보건지도사	시험에 위와	같이 응시	
합니다.			냗	일 일	일	
	응시자		Ξ.	_	르 서명 또는 인)	
한국산입	<u> </u>					

자르는 선

제 회 산업안전지도사 ·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응시표

응시번호 생년월일 응시업무영역 []기계안전 []전기안전 []화공안전 []건설안전 []직업환경의학 []산업위생	응시자격		성 명	(한자)
응시업무영역 []기계안전 []전기안전 []화공안전 []건설안전 []직업환경의학 []산업위생	응시번호		생년월일		
	응시업무영역	[]기계안전 []전기안전	전 []화공안전	[]건설안전 []직업환경의학[]산업위생

년 월 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직인

시험 일부	1.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(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분야 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) 1부	수수료
면제자 첨부서류	2. 경력증명서(영 제10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하며,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·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합니다) 1 부	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
담당 직원 확인사항 (경력증명서 제출자만 해 당)	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(경력증명서 제출자만 해당)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([]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, []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본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시 유의사항

- 1. ※표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.
- 2. 응시자는 응시업무영역 란에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102조의 업무영역별 종류 중 하나를 선정하여 ○표시하십시오.
- 3. 시험일부 면제 란은 면제사유를 가진 사람만 해당하며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104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적으십시오.
- 4. 첨부서류란 제1호의 발급기관의 증명서에는 박사학위가 기계·전기·화공·건설·위생 분야 중 어느 분야인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.
- 5. 첨부서류란 제2호 경력증명서에는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나 산업보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.
- 6. 사진은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(가로 3cm× 세로 4cm)입니다.

자르는 선

응시자 주의사항

- 1.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(부호 및 번호)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2. 응시표가 없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,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
- 3.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고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검은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.